

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

[시행 2024. 5. 23.] [조례 제9208호, 2024. 5. 23., 일부개정]

서울특별시교육청(학생맞춤지원담당관), 02-6033-5573

제3조의2(사업)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개정 2024.3.20.>

1.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
2.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
3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
4.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[본조신설 2021.7.22.]

부칙 <제9208호,2024.5.2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